

2023년 영월군체육회 체육 사업 운영지침 제정(안)



(사)영월군체육회
Yeong-wol Sports Council

목 차

I. 지침 개요	1
II. 세부 운영지침	2
1. 체육 사업 사업비 관리	2
<붙임 1> 체육 사업 사업비 관리 지침	4
2. 영월군 대표 선발 및 운영	13
<붙임 2> 영월군 대표 선발 및 운영 지침	17
3. 엘리트 선수 육성 지원	26
4. 영월군체육회 회원종목단체 행정운영비 지원	29
<붙임 3> 회원종목단체 행정운영비 등급 평가표	32
<붙임 4> 회원종목단체 행정운영비 정산 방법 및 서식 등	34

2023년 영월군체육회 체육 사업 운영지침 제정(안)

(사)영월군체육회 총무부 사업운영팀

I. 지침 개요

○ (목적) 사단법인 영월군체육회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의 보조금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

○ (관련 법규 및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 2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
- 사단법인 영월군체육회 정관 제2조 및 제4조

- 회원종목단체 및 읍·면·동 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 영월군 내 각종 종합체육대회의 개최 및 국제교류
- 강원도체육회가 개최하는 각종 종합대회의 참가 및 승인한 사업의 주최·주관
- 영월군 선수·지도자 및 직장운동경기부의 육성과 경기기술의 연구 촉진
- 범군민 생활체육 운동 전개 및 생애주기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
- 영월군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 영월군 학교체육(청소년 체육활동 포함), 전문체육, 생활체육의 진흥 및 연계 사업
- 영월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원 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 영월군에서 수탁받은 업무와 이와 관련된 제반 사업
- 영월군 체육 역사 발굴, 확산 등 문화사업
- 그 밖에 영월군 체육진흥 및 강원도체육회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II. 세부 운영지침

1 체육 사업 사업비 관리

- (목적) 체육회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체육 사업비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하기 위함.
- (예산의 확보) 사업비는 당해 연도에 익년도의 사업비 지원 예산을 편성·확보하고, 확보된 연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원단체별 운영실태, 정책 우선순위 등을 감안하여 매년 연초에 사업비를 확정.
- (지급대상) 영월군 및 체육회가 체육진흥을 위한 승인한 사업을 주관하는 단체.
- (사업비의 신청 방법) 체육회로부터 연간 사업비를 통보받은 단체는 해당 단체의 이사회와 대표자의 승인을 얻은 연간 체육대회 개최·참가 계획서를 제출.
- (사업비의 사용범위) 사업비는 보조금 관련 법을 준용하여, 해당하는 항목에 맞게 편성.
 ※ 세부 범위는 ‘사업비 관리 지침’ 을 참고.
- (사업비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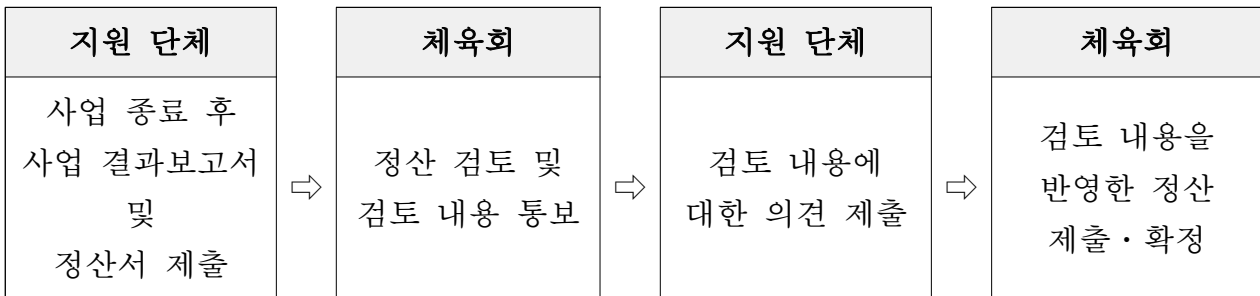
구분	종류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 대회(협회장기·배) ■ 국제·전국·도 단위 규모의 전문·생활 체육대회
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명칭 전국·도 규모대회 ■ 강원도체육회 주최 또는 주관대회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체육 프로그램, 육성 지원사업 등

○ (교부 방법) 사업비는 사업 경비를 일시로 교부하는 것을 원칙. 다만, 필요에 따라 분할 교부 가능.

- 사업비는 체육회의 전용계좌로 지급하여 수행.
- 체육대회 참가 지원 사업비의 경우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등록된 단체 명의의 전용계좌로 지급 가능.
- 사업의 주관단체가 체육회의 회원단체가 아닌 경우 체육회 사업비 전용계좌로 지급하여 수행.

○ (사업의 내용변경) 해당 단체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상 사업을 변경하거나, 신규사업 추가 또는 사업비 내역을 변경하고자 할 시 사업 기간이 종료되기 전 체육회의 사전 승인 필.

○ (사용 결과 처리)



○ (사업비 교부 제재 사항)

-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의 위반
-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의 미비
-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 사업비 교부의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하지 않았을 시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의 교부
- 체육회의 처분에 대한 위반,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 일괄 선 결제 후 사용 등

영월군체육회 체육 사업 사업비 관리 지침

제정 2022. 1. 16.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영월군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가 체육회 정관 제2조(목적) 및 제4조(사업)를 수행하기 위하여 체육회 산하 회원종목단체 및 스포츠클럽, 관련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에 지원하는 체육대회 사업비(이하 “사업비”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지침은 단체가 체육회로부터 지원받아 집행하는 사업비에 적용한다.

제3조(재원) 단체에 지원하는 재원은 체육회가 편성하여, 영월군에서 보조받아 집행하는 보조금으로 한다.

제4조(사업비의 지급대상) ① 사업비의 지급대상은 영월군 및 체육회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을 주관하는 단체로 한다.

② 체육대회 참가 사업비는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및 스포츠클럽만 해당하며, 체육회는 체육회 또는 해당 회원종목단체 및 스포츠클럽의 “영월군 대표 선발 지침”에 따라 선발·구성한 선수·단체에 지급한다.

제5조(사업비의 종류) ① 지급대상의 단체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종류는 <별표 1>에 따른다.

② 사업비 지급대상의 예산은 보조금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인건비, 행정비 등의 경상비로 집행할 수 없다.

제6조(예산확보) 체육회는 당해 연도에 익년도의 사업비 지원 예산을 편성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다.

제7조(연간 사업비액) ① 체육회는 확보된 연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원단체별 운영실태, 정책 우선순위 등을 감안하여 매년 연초에 사업비를 확정한다.

② 사업비 외 특별지원비로 체육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단체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신청 및 승인) ① 사업비를 신청하고자 하는 단체는 체육회로부터 연간 사업비를 통보받은 후 체육회가 정하는 양식에 따라 이사회 및 대표자의 승인을 얻은 연간 체육대회 개최·참가(이하 “체육대회”라 한다) 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② 체육회는 단체가 제출한 연간 대회 사업계획서를 검토 후 승인 통보한다.

③ 단체는 체육회가 승인 통보한 사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의 시작일 1개월 전까지 사업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비의 교부 결정) 체육회는 제8조에 의하여 사업비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에 제기하는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사업비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 자금의 부담 능력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제10조(사업비의 교부조건) ① 체육회는 사업비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사업비에 대한 상당률을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사업비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체육회는 사업비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

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사업비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체육회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1조(사업비 등의 교부 결정 통지) ① 체육회는 사업비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10조에 의한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교부결정통지서를 사업비 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한다.

② 보조결정전에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비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체육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2조(교부 방법) ① 사업비의 지급은 사업 경비를 일시로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에 의해서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② 사업비는 체육회 사업비 전용계좌에 지급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③ 체육회는 체육대회 참가 지원 사업비에 대해서는 단체의 전용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단체의 전용계좌로 지급 시 단체는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된 명의 전용계좌만 지급할 수 있다.

④ 사업의 주관단체가 체육회의 회원단체가 아닌 경우 체육회 사업비 전용계좌로 지급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 및 편성 범위) 사업비는 <별표 2>와 <별표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책정해야 한다. 단, 대회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체육회와 협의 후 변경할 수 있으나, 보조금 관련 법에 의거 편성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비 집행 및 항목 외 사용금지) ① 단체는 이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사업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체육회에서 교부 결정 시 정해놓은 사업 기간 전 또는 후에 사용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불인정한다.

② 단체는 제9조 및 제13조에서 정한 사용범위 외 다른 용도에 사용 또는 일괄

선 결제 후 사용 등으로 사업비를 사용하였을 경우 해당 대회 및 잔여 대회 사업비에 대하여 제한받을 수 있다.

제15조(사업의 내용변경) 단체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상 사업을 변경하거나, 신규사업 추가 또는 사업비 내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업 기간이 종료되기 전 체육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사업의 결과 보고) ① 단체는 사업비의 사업 종료 후 <별표 4>의 지출 증빙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단위사업별로 체육회가 명시한 기한 내 정해진 양식에 따라 사업비 사업 결과보고서와 그 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하게 한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으로 발생한 자부담 사업비(참가비, 기부금 등) 또한 제1항에 따라 사업비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 및 결과 보고를 하여야 하며, 참가인원 등의 증가로 인해 최종 자부담 사업비가 증가하는 경우 해당 보조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7조(사용 결과 처리) 체육회는 제16조에 의한 사업비 사업 결과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완서류를 요청하거나 현지 조사를 통해 지원사업의 수행실적이 교부 결정 내용과 조건에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회원단체는 체육회가 요구한 시정 내용에 따라야 한다.

제18조(사업비를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체육회는 사업비를 교부받은 단체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비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2.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4. 사업비 교부의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하지 않았을 때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 받았을 때
6. 이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19조(지침의 제정 및 개정) 이 지침은 체육회장의 승인으로 제정 및 개정하며, 기준 등을 정할 시 예산이 동반된 경우는 영월군과 협의 및 조정을 거쳐 정하여야 한다.

부칙(2022. 1. 1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영월군과 협의 또는 체육회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사업비 지원 체육대회 종류

구분	종류
개최	1. 군 대회(협회장기·배) 2. 국제·전국·도 단위 규모의 전문 체육대회 3. 국제·전국·도 단위 규모의 생활 체육대회
참가	1. 정부 명칭 전국·도 규모대회 2. 강원도체육회 주최 또는 주관대회 3. 강원도지사기·협회장기(배) 4. 지역 우호 차원의 순회대회
기타	1. 회원종목단체 행정운영비 2. 종목별 생활체육 프로그램 3. 각종 육성 지원사업 등
지원 제외	- 회원단체 간 친선·교류·축제 - 다른 기관·단체의 지원을 받을 경우 ※단, 중복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체육회가 검토 후 지원 판단. - 대회 일부 개인만 참가 시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비 지원 기준

목	세목	항목	금액	내용
운영비	일반 수용비	심판 수당	관련 규정 준용	- 해당 회원단체 수당 지급 규정 보유 또는 관련 노임단가 적용 가능.
		운영, 보조요원 수당	관련 규정 준용	- 심판의 경우 심판 자격증을 보유한 자만 가능. - 규정 미보유 시 체육회에서 예산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범위 내에서 책정.
		식비	8,000원	- (식비) 1인 1식 8,000원
		숙박비	25,000원	- (숙박) 2인 1실 기준 1인 25,000원 ※대회와 관련 없는 임원에게 접대·대가 성 제공을 제한하며, 예산 범위 내 편성
		홍보물 제작	실비	현수막, 배너, 팸플릿, 포스터 등 ※대회 장소 부착물
		시상품 제작	실비	- 메달, 트로피 또는 그에 따르는 시상 물품(시상금·품 제한) - 메달(트로피)과 시상 물품, 시상금·품 중복지급 불가 - 시상금으로 편성 불가(단, 전국 규모의 대회 유치 시 사업의 규모, 체류 인원 등을 검토하여 편성 가능)
		대회 운영	실비	행사 운영에 따른 소모품 등 ※송금수수료, 전화요금 등 제외
	공공요금 및 제세	보험 가입	실비	주최자 또는 상해보험 가입(의무편성)
		우편요금 등	실비	초청장 등 우편물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임차료	시설 이용료	실비	대회를 위한 시설 이용료
		대회 운영	실비	천막, 테이블, 용품 등 대회에 필요한 물품

종목별 체육대회 참가비 지원 기준

목	세목	항목	금액 및 내용
운영비	일반 수용비	식비	1식 8,000원 기준
		숙박비	1실(2인 기준) - 특별시: 70,000원 - 광역시: 60,000원 - 그 밖의 지역 : 50,000원
		교통비	1인 15,000원 기준
		버스 임차료	- 참가자의 80% 미성년자의 경우 - 참가자의 80% 어르신(만 65세)의 경우 ※임차 및 임차료는 여객 운수사업 인허가를 받은 업체만 가능하며, 해당 업체의 임차료 기준을 비교하여 산정.
		기타	- 대회의 특성에 따른 비용 및 공공요금(보험 등)

보조금 항목별 지출 증빙 구비서류

목·세목	항목	내용
공통 전체항목 필수		- 지출 품의·결의서
인건비	각종 수당	- 사역일지 - 이체·지급영수증 - 원천징수 영수증 - 자격증 ※해당자만 첨부
일반 운영비	숙박·식대	- 지출증빙서(카드 매출전표, 급식확인서 및 급식자 명단)
	교통	- 지출증빙서(카드 매출전표 등) - 유류 지급내역서 ※차량 수, 동승자 인원 등 작성
	홍보물 (현수막, 팸플릿 등)	- 지출증빙서(카드 매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등) - 사진 대장 ※장소, 게시일 등 작성 - 시장가격조사서 - 물품 검수 조서
	수용비 (시상품, 소모품, 물품 등)	- 지출증빙서(카드 매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확인서 등) - 사진 대장 - 시장가격조사서 - 물품 검수 조서 - 수령확인서
공공요금 및 제세	보험 가입	- 지출증빙서(카드 매출전표 등) - 계약서(가입내역서, 고지서 등)
	우편요금 등	- 지출증빙서(카드 매출전표 등) - 발송처 명단
임차료	대회 운영	- 지출증빙서(카드 매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확인서 등) - 계약서류 - 시장가격조사서 - 사진 대장 ※장소, 게시일, 상태, 수량 확인할 수 있도록

□ 목적

- 해당 종목을 대표하는 지도자 및 선수에 공정한 선발 및 합리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

□ 용어의 정리

- (군 대표) 영월군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하여 체육회 및 해당 종목단체에서 선발·확정한 지도자 및 선수.
- (군 대표 지도자) 군 대표 선수의 훈련 등을 지도하기 위해 영월군체육회 및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스포츠클럽이 선발한 사람으로 총감독, 감독, 코치로 구분.
- (군 대표 선수) 체육회 또는 회원단체가 종합대회 등에 우리 군을 대표하는 선수로 출전하기 위하여 선발·확정한 사람.
- (경기 임원) 대회에 출전하는 군 대표 지도자.
- (경기경력) ‘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 규정’에 따라 선수로 등록하고 활동한 경력으로 해당 회원단체가 증명할 수 있는 경력.
- (경기 지도경력) ‘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 규정’에 따라 지도자로 등록하고 선수를 지도한 경력으로 해당 회원단체가 증명할 수 있는 경력.
- (전문 스포츠 지도사)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자격 보유자.
- (강화훈련) 회원단체에서 선발한 선수 및 지도자가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군 대표 해당 종목 관내 경기장 등에서 실시하는 훈련.

○ (군 대표 지도자의 선발 절차)



○ (군 대표 지도자의 자격)

- ‘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 규정’ 또는 ‘생활체육 동호인 등록 시스템’에 지도자로 등록된 자.

※선발 당시 지도자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은 한시적으로 회원단체 소속 지도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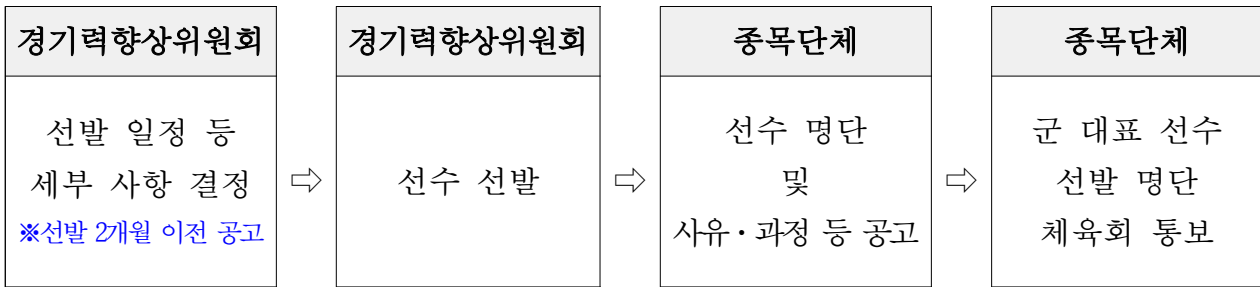
- 해당 종목 경기 지도경력 및 관련 자격증 또는 자격요건을 충족.

※세부 자격요건 ‘붙임 2’ 지침 참조.

- 종목별 여성 종목과 함께 참가할 경우 여성 지도자를 반드시 채용.

※최초 선발 공고 후 여성 지원자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제외.

○ (군 대표 선수 선발 절차)



- 체육회 또는 회원단체 군 대표 선발 지침에 따라 선발하는 것을 원칙.
- 회원단체의 군 대표 선발 규정이 정한 개인기록, 선발전 순위 및 각종 대회의 누적 순위 등 종목 특성을 반영하여 세부 기준 마련.
- 세부 기준이 없을 경우 군 대표 지도자의 추천을 받아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선발 가능.
- 선발된 선수의 수방, 훈련 소집 및 대회 출전 불응 등에 따른 결원 발생 시 심의 없이 군 대표 선발 순위에 따라 차순위 선수로 대체.
- 군 대표 이외에 연령별 대표를 선발하는 경우 해당 회원단체 경기력향상위원회는 대회의 특성에 따라 선발의 요건, 비율, 일정 및 경기력 지표 등을 정하여 심의일 1개월 이전에 공고.

○ (군 대표 선수 자격) 우리나라 국적 및 관내 주소지를 가진 사람이며, 해당 회원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

※종목별 대회에서 외국인 참가 및 관내 주소지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 출전이 가능할 시 예외로 하며, 임원은 선수가 될 수 없다.

○ (군 대표 지도자 및 선수의 결격사유)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종목단체,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및 그 회원단체 또는 지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의 체육단체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되지 않은 자.

※세부 결격사유 ‘붙임 2’ 지침 참조.

- (군 대표 선수단의 임기) 체육회 및 회원단체에서 정한 임기. 다만, 임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 종합대회 및 종목별 대회의 군 대표로 확정된 날부터 대회 종료 후 해단식 개최일까지.

□ 군 대표의 임무

○ (군 대표 지도자)

- 군 대표 선수 훈련계획 수립 및 지도와 관리
- 군 대표로 출전 대회의 결과 보고 및 선수 평가
- 군 대표 선수 선발에 대한 의견 제시
- 군 대표 선수의 경기력 부진 및 부상 등에 따른 훈련제외 건의
- 군 대표 선수의 국내·외 전지훈련과 대회 출전 시 인솔
- 군 대표로 출전하는 대회의 경기 규정 및 소청 규정의 숙지와 심판판정에 대한 이의제기
- 군 대표 선수 훈련에 대한 생활지도와 인권 및 안전보호
- 선수의 부상 예방 및 관리
- 기타 군 대표 선수의 경기력 향상과 관련되는 사항 등
- 군 대표에 대한 해당 전문분야 지원
- 군 대표 선수의 경기력 향상 및 선수 보호 등과 관련 사항의 이행

○ (군 대표 선수)

- 군 대표 지도자가 계획한 훈련 참여
- 군 대표 지도자가 경기력 향상과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의 이행
- 군 대표 지도자가 정당한 인권 및 안전보호를 위하여 지시한 사항의 이행
- 금지하는 약물의 복용 금지

영월군 대표 선발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 2022. 1. 16.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영월군체육회에서 지원하는 도·전국·국제 단위 대회에 영월군 해당 종목을 대표하는 지도자 및 선수에 공정한 선발 및 합리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 대표”는 영월군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하여 체육회 및 해당 종목단체에서 선발·확정한 지도자 및 선수를 말한다.
2. “군 대표 지도자”는 군 대표 선수의 훈련 등을 지도하기 위해 영월군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및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및 스포츠클럽(이하 “회원단체”라 한다)이 선발한 사람을 말하며, 종목별 군 대표 선수의 구성과 역할에 따라 총감독, 감독, 코치로 구분한다.
3. “군 대표 선수”는 체육회 또는 회원단체가 국제·전국·도 단위 종합경기대회(이하 “종합대회”라 한다) 또는 국제·전국·도 단위 종목별 경기대회(친선경기 및 종목 자체대회는 제외한다. 이하“종목별 대회”라 한다)에 우리 군을 대표하는 선수로 출전하기 위하여 선발·확정한 사람을 말한다.
4. “경기임원”은 대회에 출전하는 군 대표 지도자를 말한다.
5. “경기경력”이란 『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 규정』에 따라 선수로 등록하고 활동한 경력으로 해당 회원단체가 증명할 수 있는 경력을 말한다.
7. “경기 지도경력”이란 『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 규정』에 따라 지도자로

등록하고 선수를 지도한 경력으로 해당 회원단체가 증명할 수 있는 경력을 말한다.

8. “전문 스포츠 지도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자격 보유자를 말한다.

9. “강화훈련”은 회원단체에서 선발한 선수 및 지도자가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군 대표 해당 종목 관내 경기장 등에서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회원단체에서 실시하는 군 대표 선발과 관련하여 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 대표 지도자의 선발 절차) ① 종목단체 경기력향상위원회(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의 구성이 어려울 때 체육회 승인을 통하여 회원단체 대의원 총회로 대체할 수 있다)는 군 대표 지도자 선발 일정 등 세부사항을 정하여 군 대표 후보자 평가일 1개월 이전에 공고하며, 군 대표 지도자 후보자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심의하여 이사회에 추천한다. 회원단체 이사회는 추천받은 후보자 중 군 대표 지도자를 선발하고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단,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체육회와 사전협의 후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군 대표 지도자를 외국인으로 선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선발을 하지 않을 수 있으나 제1항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제5조(군 대표 지도자의 자격) ① 군 대표 지도자는 『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 규정』 또는 생활체육 동호인 등록 시스템에 따라 지도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선발 당시 지도자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은 한시적으로 회원단체의 소속 지도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군 대표 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해당 종목 경기 지도경력 5년 이상과 해당 종목의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또는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해당 종목 경기 지도경력이 4년 이상 5년 미만이지만 체육 관련 학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3. 해당 종목 경기 지도경력이 2년 이상 5년 미만이지만 2년 이상 국가대표 선수 경력이 있는 사람

4. 해당 종목 경기 지도경력이 1년 이상 5년 미만이지만 최근 3년 종합대회에서 메달을 획득 경력이 있는 사람

5. 외국인은 2년 이상 해당 국가에서의 대표 선수 경력 또는 5년 이상의 해당 종목 지도경력 있는 사람

③ 종목별로 여성 종목과 함께 참가할 경우 군 대표 지도자 선발 시 여성 지도자를 반드시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 선수가 참가할 수 없는 종목 또는 최초 선발 공고 후 여성 지원자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군 대표 선수 선발 절차) ① 군 대표 선수는 체육회 또는 회원단체의 군 대표 선발 규정에 따라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회원단체의 경기력향상 위원회는 선발 일정 등 세부 사항을 결정하고 군 대표 선수의 선발 결과를 심의한 후 후보자를 추천하면 회원단체의 장은 추천받은 후보자를 군 대표로 선발하고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② 군 대표 선수는 회원단체의 군 대표 선발 규정이 정한 개인기록, 선발전 순위 및 각종 대회의 누적 순위 등 종목 특성을 반영한 세부 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③ 회원단체의 장은 제6항의 선발을 제외한 군 대표 선수 선발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발일 2개월 이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종합대회 및 종목별 경기대회의 대회 참가요건의 공지가 늦어지는 경우 공고 지연에 대한 사유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고 선발 공고 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④ 회원단체의 장은 군 대표 선수를 선발하면 즉시 선발 사유 및 과정 일체를 포함한 선발개요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⑤ 종목단체의 장은 종합대회의 출전권을 획득한 선수를 해당 군 대표 선수로 체육회에 추천한다.
- ⑥ 회원단체 종목의 군 대표 선수의 선발은 객관적인 경기력 지표를 기준으로 선발하되, 제1항과 달리 회원단체의 군 대표 선발 규정에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경기력향상위원회는 군 대표 지도자의 추천을 받아 선발할 수 있다.
- ⑦ 제6항에 따라 선발할 경우 선발 방법 및 절차 등은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 ⑧ 군 대표 선수 선발 시 결원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군 대표 선수의 차순위를 선정하여야 한다.
- ⑨ 군 대표로 선발된 선수의 부상, 군 대표 훈련 소집 및 대회 출전 불응 등에 따른 결원이 발생 할 경우에는 심의 없이 군 대표 선발 순위에 따라 차순위 선수가 군 대표 선수가 된다.
- ⑩ 이 지침에서 정한 군 대표 이외에 연령별 대표를 선발하는 경우 회원단체 경기력향상위원회는 종목별 대회의 특성에 따라 선발의 요건, 비율, 일정 및 경기력 지표의 기준 등 세부사항을 사전에 정하여 심의일 1개월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군 대표 선수 자격) ① 군 대표 선수는 우리나라 국적 및 관내 주소지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종목별 대회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 국적 또는 관내 주소지가 아닌 사람이 군을 대표하여 각종 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군 대표 선수는 해당 회원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선발

당시 선수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은 한시적으로 회원단체의 소속 선수로 등록 하여야 한다.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군 대표, 경기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종목단체, 대한체육회·시·도체육회 및 그 회원단체 또는 지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의 체육단체(이하 “체육회 관계단체”라 한다)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4.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폭력행위로 1년 미만의 자격정지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부터 자격정지 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5.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폭력행위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6.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성희롱, 성매매 또는 성폭력과 관련된 비위 행위(제8호의 강간·강제추행 제외)로 1년 미만의 자격정지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부터 자격정지 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7.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성희롱, 성매매 또는 성폭력과 관련된 비위 행위(제8호의 강간·강제추행 제외)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
8. 체육회 관계단체 등에서 승부조작, 국가대표 및 강화훈련 선수 선발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부정선발, 담합, 금품수수), 훈련비 횡령, 배임, 강간·강제추행행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

9. 음주운전 등과 관련한 행위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나. 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0. 도박과 관련한 행위로 형법 제246조 또는 제247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가. 1천만원 초과 of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1. 학교폭력, 인권침해 등의 사회적 물의로 인하여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자격정지 또는 출전정지 1년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12. 학교폭력, 인권침해 등의 사회적 물의로 인하여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1년 미만의 자격정지 또는 출전정지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부터 징계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13. 해당 종목단체의 임원

제9조(군 대표 선발의 이의신청) ① 회원단체의 장은 선발된 군 대표의 명단을 공개한 후 1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두어야 한다.

② 회원단체의 장은 이의를 신청한 사람에게 민원사무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결과를 회신하고, 그 처리내용을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람은 군 대표 선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해당 회원종목단체에 등록된 선수

2. 군 대표 선발전에 출전한 선수의 보호자, 지도자, 소속팀의 장

제10조(자료의 보관) 군 대표 선발과 관련한 자료는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하며, 이의신청 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선발과 관련한 근거자료(선발 결과 기록지, 회의 자료, 및 회의록 등)는 5년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군 대표 선수단의 임기) 군 대표 선수단의 임기는 체육회 및 회원단체에서 정할 수 있으며,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대회 및 종목별 대회의 군 대표로 확정된 날부터 대회 종료 후 선수단 해단식 개최 일까지로 한다.

제12조(군 대표의 임무) ① 군 대표 지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대표 선수의 훈련계획 수립 및 지도와 관리
2. 군 대표로 출전한 대회의 결과 보고 및 선수 평가
3. 군 대표 선수 선발에 대한 의견 제시
4. 군 대표 선수의 경기력 부진 및 부상 등에 따른 훈련제외 건의
5. 군 대표 선수의 국내·외 전지훈련과 대회 출전 시 인솔
6. 군 대표로 출전하는 대회의 경기 규정 및 소청 규정의 숙지와 심판판정에 대한 이의제기
7. 군 대표 선수의 훈련에 대한 생활지도와 인권 및 안전보호
8. 선수의 부상 예방 및 관리
9. 기타 군 대표 선수의 경기력 향상과 관련되는 사항 등
10. 군 대표에 대한 해당 전문분야 지원
11. 군 대표 선수의 경기력 향상 및 선수 보호 등과 관련 사항의 이행

② 군 대표 선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대표 지도자가 계획한 훈련 참여
2. 군 대표 지도자가 경기력 향상과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의 이행
3. 군 대표 지도자가 정당한 인권 및 안전보호를 위하여 지시한 사항의 이행

4. 금지하는 약물의 복용 금지

제13조(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군 대표는 우리 군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훈련과 대회에 임하고 군 대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삼가고 군민에게 자랑스러운 군 대표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군 대표의 보호 및 지원) 체육회와 회원단체는 군 대표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고 훈련 여건의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대회 참가 출전경비 및 훈련 용품 지원
2. 군 대표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고충 처리 절차 마련
3. 선수의 부상 예방 및 관리

제15조(군 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의 제·개정) ① 회원단체는 이 지침을 준용하여 회원단체의 군 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지침)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야 한다. 다만, 친선 대회 또는 자체 종목대회에 출전하기 위하여 군 대표를 선발할 시에는 회원단체가 해당 종목의 특성에 맞춰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② 회원단체는 군 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지침)을 제정 또는 개정할 시에는 반드시 체육회 승인을 받고 모든 군민이 볼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③ 회원단체는 군 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지침)을 제·개정 후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개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규정(지침) 개정 후 시행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6개월 이내에 제·개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 사유에 대해 체육회와 협의 하여야 한다.

⑤ 회원단체는 군 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지침)을 제정 또는 개정하지 않아 선발할 수 없거나 이 지침과 상이할 시 이 지침을 따르며, 해석상 분명하지 않은 사항은 체육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16조(군 대표 훈련의 관리) 군 대표 훈련에 관한 사항은 회원단체가 별도로

정한 후 체육회에 보고하여 시행한다.

부칙(2022. 1. 1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체육회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 종목별 군 대표 선발 계획에 따라 행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본다.

□ 목적

- 지역 출신 소속 체육 인재 육성·유입 및 종합체육대회 성적 기대
- 지원기준 마련에 따른 형평성 있는 추진

□ 용어의 정리

- (전문체육)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
- (선수)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
- (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운동경기부) 선수로 구성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
- (체육단체)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로서 체육회,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경기단체를 말한다.
- (경기단체)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
- (특기생) 운동 따위의 특별한 기술이나 재능을 인정받은 학생 또는 상급 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을 말한다.

□ 지원 적용대상

- 선수는 관내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으며, 체육단체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함.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특기생으로 인정받은 선수로서 운동경기부 또는 체육단체에 소속되어 있어야 함.
- 영월군 및 영월군체육회의 목적사업에 부합하는 전문체육 선수.

□ 사업개요

- (사업계획 수립 및 지원 대상평가) 매년 1~2월
- (사업 운영 및 지원) 매년 3~12월
- (사업예산) 100,000천원
- (사업 추진 체계)



○ (사업비 편성기준) ※1인 기준

항목	내역	금액(원)	비고
월 2회 관내·외 훈련 및 대회 지원		1,030,000	
식비	8,000원×3식×2일×10개월	480,000	
숙박비	25,000원×1일×10개월	250,000	
교통비	15,000원×2일×10개월	300,000	

○ (사업비 집행 항목)

- 운동부 훈련에 필요한 용품 등
- 선수의 일상 훈련에 필요한 식비·목욕비 등
- 대회 참가에 따른 경비

□ 세부 운영

○ (지원 방법) 사업비를 신청하고자 하는 단체는 체육회로부터 연간 사업비를 통보받은 후 체육회가 정하는 양식에 따라 소속 단체의 장 또는 대표자의 승인을 얻은 후 사업 시작일 1개월 전까지 공문을 통하여 지원.

○ (제출서류)

- 소속 체육단체 또는 학교장의 직인이 날인된 공문 1부.
- 연간 대회 참가계획서 1부.
- 체육회 지원 사업비 외 체육단체·학교 등 지원 사업비 현황 1부.
- 운동경기부 또는 선수가 소속 단체에 등록된 사실이 가능한 확인서 각 1부.

1. (체육단체) 회의록, 선수 명단

2. (학교) 확인서, 재학증명서, 선수 명단

- 운동경기부 또는 선수가 경기단체에 등록된 사실이 가능한 확인서 1부.
- 주민등록초본 및 경기실적증명서 각 1부.

○ (사업비 지급 및 수령) 사업비는 개인에게 지급할 수 없음. 단체는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명의 법인계좌로 지급.

○ (사업비 지원 제외 및 대상)

- 사업 중 인원의 증·감 변동 체육회 미보고.
- 체육단체 또는 학교 등에서 징계를 받았을 때(운동경기부가 징계를 받았을 때는 소속 선수 전체 지원 제외)
- 연봉 또는 다른 지원 및 혜택을 받는 자
- 근거 증빙자료가 허위인 경우
- 운동경기부 또는 체육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며, 특기생이 아닌 자
- 체육회장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 (지원 제재) 사업 중 지원 제외 및 대상자 발생, 인원의 변동 등이 있음에도 체육회에 보고 또는 승인을 받지 않고 차액을 집행하거나, 체육회에서 승인한 항목 외 집행에 대해서는 사업비 집행 금지 명령 및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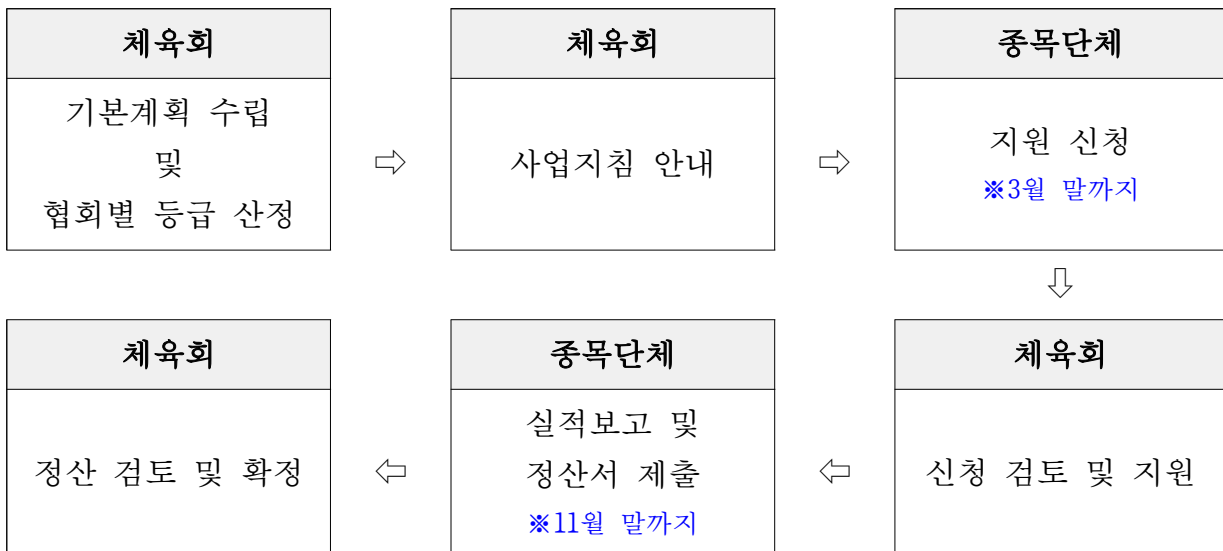
4 영월군체육회 회원종목단체 행정운영비 지원

□ 목적

- 군 체육 및 종목 선수, 지도자, 심판 육성과 체육진흥 사업 업무처리에 필요한 행정운영비 지원에 따른 필요한 지출 마련으로 투명하고 건전한 보조금 관리 및 단체운영의 업무추진 효율성 도모.

□ 개요

- (사업계획 방침 결정) 매년 1~2월 중
- (사업 시행 및 지원) 매년 2~3월까지
- (정산보고 및 검토) 매년 11~12월까지
- (회원종목단체 수) 총 32개 단체(정회원 30개, 준회원 1개, 인정 1개)
- (예산액) 40,000천원
- (사업 추진 절차)



□ 세부 운영개요

○ (지원 방법) 지원비는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차등 지원.

○ (지원 종목)

- (전문체육) ‘강원도민체육대회’ 와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를 병행하는 종목.

- (생활체육) ‘강원도민체육대회’ 에 제외된 순수 생활체육 종목.

○ (평가기준표)

평가 기준		배점	비 고
계		100	
전문체육 종목	강원도민체육대회 참가 성적	60	• 종합 3위 이상 : 60점
			• 종합 4~6위 : 40점
			• 종합 7~9위 : 20점
	동호인 조직구성 비율	40	• 200명 이상 조직구성 : 40점
			• 200명 미만 조직구성 : 20점
			• 100명 이하 조직구성 : 10점
계		100	
생활체육 종목	체육대회 주관 개최 ※대회 기준 - 참가선수 250명, 기간 2일 이상.	60	• 국제 단위대회 주관 개최 : 60점
			• 전국 단위대회 주관 개최 : 40점
			• 도 단위대회 주관 개최 : 20점
	동호인 조직구성 비율	40	• 200명 이상 조직구성 : 40점
			• 200명 미만 조직구성 : 20점
			• 100명 이하 조직구성 : 10점
지원 제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격 및 준·인정단체: 미지원 • 강원도 종합 체육대회 불참 단체: 미지원 • 임원 미 인준 및 정족수 미달: 감점 -20점 • 정회원 요건의 동호인 조직구성 미달 단체: 감점 -30점

- (등급별 지원액) A~D등급으로 평가하여 연간 지원비로 지급하며, 70점 이상 A등급(3,000천원), 70점 미만 B등급(2,000천원), 40점 미만 C등급(1,000천원), D등급은 미지원.
- (지원 방법) 지원 단체는 ‘영월군체육회 체육 사업 사업비 관리 지침’에 따라 당해 3월 말까지 지원 신청.
- (예산의 편성) 예산은 다음의 편성목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인건비 등으로는 편성 제한.

편성목	비율	내용	비고
수용비	30% 내외	사무용품, 장비구입 등	
여비	30% 내외	해당 종목 대표자 회의, 공식 대회 출장 등	
업무추진비	40% 내외	총회·이사회 개최 등	

○ (사업비의 제재 대상 및 항목)

- 해당 단체의 사업비 전용계좌(카드)가 아닌 개인카드 사용.
- 다른 사업비랑 중복 관리 및 사용.
- 사업 기간 종료 이후 또는 월·연말 일괄 예산집행.
- 사고 발생(단체운영 및 회계 부정 등).
- 사업 (중간)보고 및 정산 증빙자료 제출 불이행.
- 해당 종목단체장, 회장 대리인, 전무이사 외 사용.
- 체육회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목의 변경 및 사업비 집행.

■ 자산취득 물품구입	■ 개인 용무의 출장 여비 및 주유비
■ 개인 명의 휴대폰 요금	■ 대회 참가비 및 운영비
■ 사우나 및 유흥주점 사용	■ 주류 및 만찬비
■ 경조사비 및 화환구입비	■ 총회 및 이사회 참석자 수당
■ 개인이 사업 용도로 임차한 건물의 임차비	

붙임 3

회원종목단체 행정운영비 등급 평가표

[별표 1] 회원종목단체 행정운영비 등급 평가표 “전문체육”

종 목	지원 금액 (천원)	계		강원도민체육대회 참가 성적			동호인 조직구성 비율			비고
		등급	점수	종합 3위 이상 (60)	종합 4~6위 (40)	종합 7~9위 (20)	200명 이상 (40)	200명 미만 (20)	100명 이하 (10)	
합 계	0			0	0	0	0	0	0	
검 도										
골 프										
궁 도										
농 구										
당 구										
력 비										
바 득										
배 드 민 턴										
볼 링										
사 격										
산 약										
수 영										
수 중 핀 수 영										
씨 림										
야구소프트볼										
유 도										
육 상										
족 구										
체 조										
축 구										
탁 구										
태 권 도										
테 니 스										
합 기 도										
승 마 (준)										

[별표 2] 회원종목단체 행정운영비 등급 평가표 “생활체육”

종 목	지원 금액 (천원)	계		체육대회 주관 개최			동호인 조직구성 비율			비고
		등급	점수	국제단위 (60)	전국단위 (40)	도 단위 (20)	200명 이상 (40)	200명 미만 (20)	100명 이하 (10)	
합 계	0			0	0	0	0	0	0	
게 이 트 볼										
국 학 기 공										
그라운드골프										
낚 시										
파크골프										
패러글라이딩										
드론스포츠(인정)										

붙임 4

회원종목단체 행정운영비 정산 방법 및 서식 등

[별표 1] 회원종목단체 행정운영비 정산 방법

구 분	주 요 내 용	비고																
수용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편요금, 사무용품 구입 ※사무용품 구입 등의 지출 시 연말 일괄 계산 불인정 ■ 소모성 경기용구 구입 																	
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 및 공식적인 대회 출장 여비(공무원 국내 여비 지급표 적용) <p>1. 여비</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margin-bottom: 10px;"> <tr>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필수 증빙서류</td> </tr> <tr> <td colspan="4"> 톨게이트 영수증, 대중교통 영수증, 현지에서 사용한 카드 영수증, 숙박비 영수증, </td> </tr> </table> <p>2. 회의서류, 대회 팸플릿, 대회개최 문서 및 사업 계획서 첨부.</p> <p>3. 본회 승인된 회장, 회장 대리인, 전무이사에 한하며, 증빙서류 첨부 후 개인 계좌로 입금. 정산 시 입금증 등 첨부.</p> <p>【참고】 국내 여비 지급표</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교통비</th> <th style="text-align: center;">일비 (1일당)</th> <th style="text-align: center;">숙박비(1박당)</th> <th style="text-align: center;">식비 (1일당)</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버스요금 기준</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00</td> <td> 실비(상한액) - 서울특별시 70,000원 - 광역시 60,000원 - 그 밖의 지역은 50,000원 </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00</td> </tr> </tbody> </table>	필수 증빙서류				톨게이트 영수증, 대중교통 영수증, 현지에서 사용한 카드 영수증, 숙박비 영수증,				교통비	일비 (1일당)	숙박비(1박당)	식비 (1일당)	버스요금 기준	20,000	실비(상한액) - 서울특별시 70,000원 - 광역시 60,000원 - 그 밖의 지역은 50,000원	20,000	
필수 증빙서류																		
톨게이트 영수증, 대중교통 영수증, 현지에서 사용한 카드 영수증, 숙박비 영수증,																		
교통비	일비 (1일당)	숙박비(1박당)	식비 (1일당)															
버스요금 기준	20,000	실비(상한액) - 서울특별시 70,000원 - 광역시 60,000원 - 그 밖의 지역은 50,000원	20,000															
업무추진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회, 이사회, 간담회 등 공식적인 회의비 단, 사전에 개최계획서 수립 및 사전 품의 후 사용. <p>1. 회의비 산출 방법 : (1인) 30,000원×00명=000,000원.</p> <p>2. 사전 회의 개최계획서, 참석자 등록부 및 회의서류 등 첨부.</p>																	

보조금 교부신청서

단체명			
고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화		FAX	
주소	(우편번호) 00000 강원도 영월군		
사업명(대회명)			
사업 기간	20〇〇. . . ~ . . .		
대회 기간			
총사업비	천원	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
		시·군비	천원(%)
사업목적 및 주요 사업 내용	<input type="checkbox"/> 사업목적 - - - <input type="checkbox"/> 사업내용(참가선수 인원, 대회 내용 등) - - -		
담당자	직위:	연락처	
	성명:	E-mail	

년 월 일

종목명:

(직인)

영월군체육회장 귀하

사업실행계획서

○ (책임자)

- 직 위 :
- 성 명 :
- 연락처 :

○ (실무자)

- 직 위 :
- 성 명 :
- 연락처 :

○ (추진 일정)

- *수용비 구입 품목 등
- *전국·도 단위 대표자 회의 참석 일정 등
- *총회·이사회 회의 개최 일정 등

○ (기대효과)

-
-
-

예산 집행계획서

1. 총괄표

(단위:천원)

계	군 보조금	자부담	비 고

2. 군비보조금 집행계획

(단위:원)

구분	예산 비목	세부항목	금액	산출내역(구체적 산출 근거 : 단위는 원으로)
합계(총사업비)				
사업명	수용비	소계		
				(상세히 작성) -
	여비	소계		
				(상세히 작성) -
	업무추진비	소계		
				(상세히 작성) -